


검사 실시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E서울북부G5-2020-4901	고객안내번호	4009-2006-0288-2
접수번호	4009-20200508-00038	관할검사기관	서울북부지사
건물명	공릉3단지아파트		
건물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발로 123 (공릉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검사대수	10대
검사실시일	2020.05.27 ~ 2020.05.28	검사자	이용재
판정결과	합격	조건부합격(보완)	불합격
	2	6	2
	※ 관련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2조 - 합격 :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 조건부합격(보완) :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 불합격 :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안내사항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지 않았다면 즉시 안전관리자 선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법정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 교육신청 : 승강기교육센터(https://edu.koelsa.or.kr) ②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검사주기 6개월)가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가 완료된 후 다음번 검사주기도래 안내문이 발송됨에 따라 해당 승강기는 검사주기도래일에 임박하여 안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객님의 신청하신 승강기검사에 대한 검사실시결과를 안내드리며, 승강기별 세부사항은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29일			
첨부 1. 검사실시결과내역서 2. 검사성적서 3. 조건부합격(보완) 확인검사 신청 안내문 4. 부적합내역서 5. 불합격내역서 6. 시정권고내역서 7.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501호			TEL : 1566-1277

검사실시결과내역서

고객안내번호	4009-2006-0288-2	접수번호	4009-20200508-00038	
건물명	공릉3단지아파트			
건물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발로 123 (공릉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관할검사기관	서울북부지사	
검사실시일	2020.05.27 ~ 2020.05.28			
상세내역				
승강기고유번호	호기(설치장소)	형식/종류	판정결과	검사유효기간(보완기간)
0086-431	1(301-1)	권상식/WVF/승객용	조건부합격	2020.05.27 ~ 2020.06.26
0086-432	2(301-2)	권상식/WVF/승객용	조건부합격	2020.05.27 ~ 2020.06.26
0086-433	3(301-3)	권상식/WVF/승객용	조건부합격	2020.05.27 ~ 2020.06.26
0086-434	4(302-1)	권상식/WVF/승객용	조건부합격	2020.05.27 ~ 2020.06.26
0086-435	5(302-2)	권상식/WVF/승객용	불합격	
0086-436	6(303-1)	권상식/WVF/승객용	합격	2020.06.12 ~ 2020.12.11
0086-437	7(303-2)	권상식/WVF/승객용	합격	2020.06.12 ~ 2020.12.11
0086-438	8(303-3)	권상식/WVF/승객용	조건부합격	2020.05.27 ~ 2020.06.26
0086-439	9(304-1)	권상식/WVF/승객용	불합격	
0086-440	10(304-2)	권상식/WVF/승객용	조건부합격	2020.05.28 ~ 2020.06.26

- 이하여백 -

조건부합격(보완) 승강기 확인검사 신청 안내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승강기 검사결과, 아래의 승강기에 대해서 조건부합격(보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후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기간 내 보완조치 및 확인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승강기 운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검사 신청방법 : 승강기민원24(<http://minwon.koelsa.or.kr>) → 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신청 → 조건부합격(보완) 확인검사

고객안내번호	4009-2006-0288-2			접수번호	4009-20200508-00038		
건물명	공릉3단지아파트						
건물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발로 123(공릉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관할검사기관	서울북부지사				
검사실시일	2020.05.27 ~ 2020.05.28			보완기간	2020.05.28~2020.06.26		
상세내역							
순번	호기 (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승강기형식	승강기종류	확인검사방법	확인검사수수료	부가세
1	1(301-1)	0086431	권상식VVVF	승객용	서류확인	0	0
2	2(301-2)	0086432	권상식VVVF	승객용	서류확인	0	0
3	3(301-3)	0086433	권상식VVVF	승객용	서류확인	0	0
4	4(302-1)	0086434	권상식VVVF	승객용	서류확인	0	0
5	8(303-3)	0086438	권상식VVVF	승객용	서류확인	0	0
6	10(304-2)	0086440	권상식VVVF	승객용	서류확인	0	0
합계						0	0
총합계						0	

부적합내역서

고객안내번호	4009-2006-0288-2	접수번호	4009-20200508-00038
건물명	공릉3단지아파트		
건물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발로 123(공릉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관할검사기관	서울북부지사
검사실시일	2020.05.27 ~ 2020.05.28	보완기간	2020.05.28~2020.06.26
상세내역			
호기(설치장소)	검사항목	부적합내용	조치결과
1(301-1)	1.3.7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상부 작업등 미점등)	
1(301-1)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3층 승강장 도어 연동로프 파단)	
1(301-1)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1(301-1)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12층 승강장 도어 도르래 파손 - 홀수층 운행)	
2(301-2)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14층 승강장 도어 연동로프 파단)	
2(301-2)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3(301-3)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3(301-3)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3,6층 승강장 도어 연동로프 파단)	
3(301-3)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2층 승강장 도어 키홀 파손)	
4(302-1)	1.4.3	카문 문짝과 문틀 사이 틈새 초과	
4(302-1)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8(303-3)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14층 승강장 도어 인터록 롤러 마모)	
8(303-3)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2층 승강장 도어 추로프 단선)	
10(304-2)	1.4.4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세이프티슈 고정 상태 불량)	
10(304-2)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 부적합내용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기준내용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내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따라 실시한 승강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해당 승강기의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기간(4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할지자체로 통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안내번호	4009-2006-0288-2	접수번호	4009-20200508-00038
건물명	공릉3단지아파트		
건물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123 (공릉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관할검사기관	서울북부지사
검사일	2020.05.29	재검사신청완료일	2020.09.27
상세내역			
호기(설치장소)	검사항목	부적합내용	
5(302-2)	1.3.7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상부 작업등 미점등)	
5(302-2)	1.4.1	카 내 비상통화장치 설치상태 불량	
5(302-2)	1.5.4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브레이크 라이닝 슈 고정 압대 파손)	
5(302-2)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5(302-2)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균형체인 피트 바닥 간섭)	
9(304-1)	1.4.4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세이프티슈 고정 상태 불량)	
9(304-1)	1.5.4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브레이크 압대 고정 분할핀 없음)	
9(304-1)	1.6.1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상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못치는 구조)	
9(304-1)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카운터 레일 오일통 없음)	
9(304-1)	1.13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플러저 측면부 파손)	

※ 부적합내용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기준내용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내역서

공단에서는 승강기 검사와 별도로 승강기 품질유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취약항목 및 개선방법을 시정권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서는 시정권고 내용을 확인하여 승강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안내번호	4009-2006-0288-2	접수번호	4009-20200508-00038
건물명	공릉3단지아파트		
건물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발로 123 (공릉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관할검사기관	서울북부지사
검사실시일	2020.05.27 ~ 2020.05.28		
상세내역			
검사항목	시정권고내용	호기(설치장소)	
(정밀) 13.2.2	브레이크 시스템의 노후로 인해 브레이크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어 브레이크 패드의 비정상 마모가 유발될 수 있어, 제동력을 상실에 의한 개문출발이나 상승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오니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13.2.2에 적합한 이중(기계적,전기적)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변경을 권고 드립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정밀)10.6, 10.7	브레이크 시스템의 노후로 인해 브레이크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어 브레이크 패드의 비정상 마모가 유발될 수 있어, 제동력을 상실에 의한 개문출발이나 상승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오니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10.6, 10.7에 적합한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개문출발방지장치의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정밀)13.2.3.6	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감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 내 장시간 감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13.2.3.6에 적합한 자동구출운전수단의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정밀)7.5.3.2	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강장문 이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5.3.2에 적합한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장치의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1(301-1)	

검사항목	시정권고내용	호기(설치장소)
(정밀)7.5.3.8	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조립체(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5.3.8에 적합한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의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정밀)7.6.2.2.1	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강장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손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6.2.2.1에 적합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의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카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손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기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6.2.2.1에 적합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의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1.4.4	승강장 도어 포토센서 작동 불량	8(303-3)
1.5.1.1	주로프 및 도르래 마모 진행중이오니 자체점검시 주의관찰 바랍니다.	10(304-2)
	주로프 및 도르래 부식 및 마모 진행중이오니 자체점검시 주의관찰 바랍니다.	1(301-1) 4(302-1)
10.7	구동기 또는 승강기 제어시스템 고장으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는 상태에서 통제불능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장치(로프브레이크 또는 이중브레이크)의 보안을 권고합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16.3.3	당 현장의 비상통화장치의 경우 여러대가 동시에 비상 구조상황 발생시 긴급통화가 원활치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장치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10(304-2)
9.6.3	보상체인 고정부는 운행 중 체인 흔들림에 의한 피로하중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파단이 발생되어 이탈될 수 있으므로 보호로프 설치하는 등 추가적으로 안전 조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1(301-1) 2(301-2) 3(301-3) 4(302-1) 5(302-2) 6(303-1) 7(303-2) 8(303-3) 9(304-1)

검사항목	시정권고내용	호기(설치장소)
		10(3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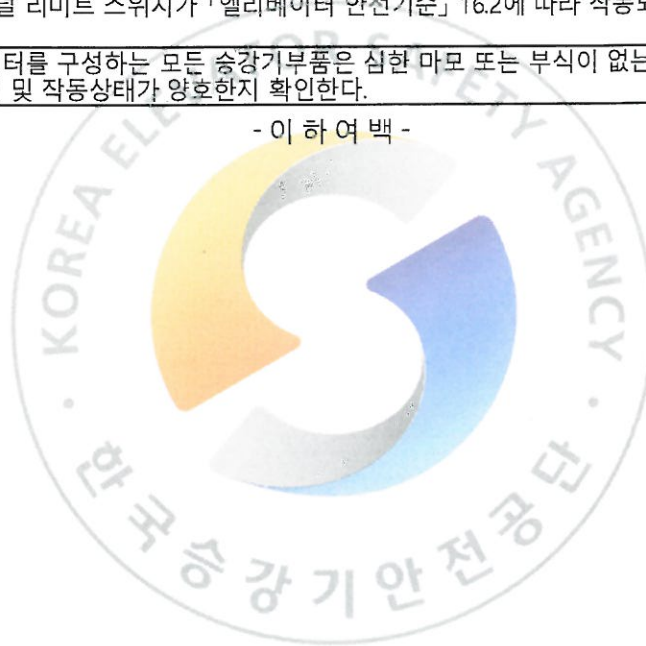
- 이하여백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기준

검사항목	검사기준내용
1.3.7	가) 승강로 내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 6.1.5.1라)에 따라 조도, 점멸수단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1.4.1	다)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3.3에 따라 카 내에서 시설물 내 및 유지관리업체 등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1.4.3	가)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1.4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1.4.4	가) 문닫힘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7.6.2.2.1나)에 따라 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1.5.1.1	가) 로프의 마모 및 파단이 부속서 IV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한다.
1.5.4	가) 무부하의 정격속도로 상승운행 중 비상정지 시켜 로프와 도르래간 과도한 미끄러짐 없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1.6.1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2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1.13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승강기부품은 심한 마모 또는 부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승강기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이하여백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승강기 관리주체님께

-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리주체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관련

2019.03.28.부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또는 2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시행규칙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3.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덤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1, 2의 경우에는 3에 따라 검사의 주기가 2년인 승강기도 포함하여, 1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검사주기 6개월 조정

②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관련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법 제30조 (보험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책임보험관련 보상한도액의 경우 시행령 참조 ③.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 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검사 안전개선조치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8. 3. 27. 전부개정, 2019. 3. 28. 시행)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중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 기준에 따라 개선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종류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
전기식 엘리베이터	¹⁾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²⁾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³⁾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⁴⁾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⁵⁾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⁶⁾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⁷⁾ 브레이크 시스템 및 ⁸⁾ 자동구출운전수단 ※ 1), 2), 3), 4), 8) ⇒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모두 적용 제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포함)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수단, 스킵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 스킵 디플렉터 ⇒ 경사형/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보조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 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중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 조치사항

- 조치대상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 조치내용 : 상기 승강기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 승강기부품이나 장치
- 조치기간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 *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부품이나 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조사나 유지관리업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조치기간 내 미조치 시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